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6-115호

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“가축·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”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26일
농림축산식품부 장관

1. 목적 :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
2. 지역 : 경기도
3. 대상 : 오리류 축산농장에 가축·축산관련 종사자·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, 물품 등 이동 금지

가. 축산농장 : 오리류 농장

나. 축산관련 종사자 : 임상수의사, 수집상, 중개상, 가축분뇨 기사, 동물약품·사료·축산기자재 판매자, 농장관리자, 가축운송기사, 사료운반기사, 컨설팅·등 오리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

다. 축산관련 작업장 : 오리류 도축장, 사료공장, 사료하치장, 사료대리점, 분뇨처리장, 공동퇴비장, 가축분뇨공공처리장, 공동자원화시설, 축산관련운반업체, 축산관련용역업체,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, 축산컨설팅업체, 퇴비제조업체, 종계장,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

4. 기간 : 2016.3.27. 00시부터 2016.3.28. 12시까지(36시간)

5. 기타사항

- 가.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오리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·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
- 나.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·차량·물품 등은 오리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
- 다.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·차량·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
- 라.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

6. 문의처 :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(전화 044-201-2377 또는 2378)

일시 이동중지(Standstill) 운영계획

- '16.3.27(일) 00시 ~ 3.28(월) 12시, 경기도 오리관련 시설 -

2016. 3. 26



농림축산식품부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목 차

I. 운영 개요	1
II. 준수사항 및 방역조치	3
III. 이동승인 운영요령	4
IV. 이행사항 점검계획	5
V. 향후 추진계획	6
참고 1. 중앙 합동점검반 구성현황	7
2. 주체별 방역조치 대응요령	8
3. 농가 방역수칙	18
4. 이동승인 신청서	19
5. 일시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증명서	20
6.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	21
7. 점검표 및 확인서	22
8.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결과 집계표	28

I. 운영 개요

1. 목 적
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(AI SOP)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명확화
-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·축산관련 시설별 방역준수사항 시행 및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 효과 증대
-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현장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등 강력한 대응

2. 적용기간 : '16.3.27일 00시 ~ 3.28일 12시(36시간)

※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,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, 필요시 1회 48시간의 범위 내 연장 가능

3. 적용지역 : 경기도

4. 적용대상 : 오리농가, 도축장, 출입차량 등 약 64백개소

* 오리농가 1백여개소, 도축장 2개소, 사료공장 12개소, 차량 63백대 등

○ 오리농장의 가축·축산관련 종사자·차량

○ 축산 관련 작업장의 축산 관련 종사자, 차량, 물품 등

* 오리농장 : 오리류 사육농가

* 축산관련 종사자 : 임상수의사, 수집상, 중개상, 가축분뇨 기사, 동물약품·사료·축산기자재 판매자, 농장관리자, 가축운송기사, 사료운반기사,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

* 축산관련 작업장 : 도축장, 사료공장, 사료하치장, 사료대리점, 분뇨처리장, 공동 퇴비장, 가축분뇨공공처리장, 공동자원화시설, 축산 관련운반업체, 축산관련 용역업체,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, 축산 컨설팅업체, 퇴비제조업체, 종축장,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

5. 전파 방법

□ 농식품부는 관계부처, 지자체,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등을 통해 발표(3.26일)

□ 검역본부는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오리류 사육농가 및 축산 관계자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파(3.26일)

□ 시·도(시·군)는 관내 모든 축산농가·축산관련 종사자(업체)에게 SMS,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 전파, 공고문 게재*(3.26일)

*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3(일시 이동중지 명령)제4항에 따라 조치

□ 농협·축종별 단체·협회는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 전파

* 특히, 도축·사료·동물약품·가축분뇨·기자재 등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는 소속직원 및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즉시 통보

〈 기관별 전파대상 〉

기관명	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전파대상 및 방법
농림축산식품부	관계부처, 지자체,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보도 등
검역본부	KAHIS에 등록된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
시·도지사 (시·도 방역기관) 및 시장·군수	관내 축산농가·축산관련 종사자(업체)에 SMS 및 마을방송 등 닭,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(업체)는 사전에 기초정보(이름, 핸드폰 등)를 확보
농협·단체·협회	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사항 전파 : 농협중앙회(회원조합), 대한수의사회, 대한양계협회, 한국계육협회, 한국토종닭협회, 한국오리협회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, 한국동물약품협회, 한국사료협회, 한국육가공협회,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,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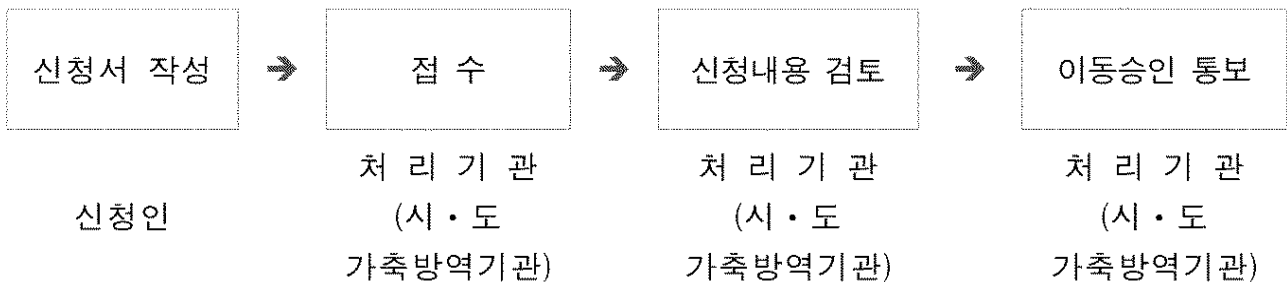
II. 준수사항 및 방역조치

- ☐ **축산농가** :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, 차량 내·외부 세척·소독 및 농장 내·외부 소독
 - 주변지역, 도로에 대해서도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소독 실시
 -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, 차량 내·외부 세척·소독 후 운행을 중지하고 농장 내·외부 소독
 - 축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
 - 농가 내 구서, 쥐구멍 차단 등 외부 발생요인 유입 예방 철저
- ☐ **축산관련 종사자** :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·외부 세척·소독 실시
- ☐ **축산관련 차량** : 차량 GPS부착 및 항시 전원 ON 유지
 - 축산차량 외부의 바퀴, 흙받이 및 차량 내부의 운전핸들, 발 매트 등점 세척·소독하고, 차량 전체 내외부를 세척·소독 조치
 - 축산차량은 전국 모든 가금류 농장 및 축산시설 출입이 금지되므로 운행을 중지, 소속 공장(회사)으로 이동하여 세척·소독
- ☐ **축산관련 작업장** :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, 차량 내·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 철저한 소독
- ☐ **농협** : 공동방제단 동원하여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소독, 생석회 방역물품 지원,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소독(철새도래지 직접 소독 금지)
- ☐ **지자체** :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, 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여부 등 집중단속, 고발조치

Ⅲ. 이동승인 운영요령

1. 이동승인 신청

-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,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 제출



- ※ 시·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이동승인시 ①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,
②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는 요건 확인

2. 이동승인서

- 이동승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대상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서 발급

3. 이동중지 예외 대상의 처리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동중지 명령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예외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며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승인
-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서를 발급

IV. 이행상황 점검계획

1. 점검 개요

- ☐ 배 경 : 오리류 등에 대한 「일시 이동중지 명령」
- ☐ 점검기간 : '16.3.27(일) 00:00 ~ 3.28(월) 12:00 (36시간)
- ☐ 점 검 반 : 14개반 28명(농식품부 10명, 검역본부 15, 경기도 3)
- ☐ 점검대상 : 경기도(31개 시·군)
 - 오리 농가, 축산관련 종사자 및 작업장, 철새도래지 등

2. 점검 내용

- ☐ 「일시이동중지 명령」에 따른 지자체 등의 이행실태* 전반
 - * 지자체의 이동중지 이행여부 점검반 실질운영 여부 등
- ☐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*
 - *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의 주요도로 설치 운영, 축산차량 통제, 운영인력 적정,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등 거점소독소 운영 실적(경기 이천) 등
- ☐ 농가별 방역조치 이행사항 준수, 철새도래지 적정 관리 여부
- ☐ 시설물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,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
- ☐ 축산관련 차량 중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여부
- ☐ 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단방역 이행여부 등

3. 협조 사항

- ☐ (AI 예방통제센터)점검반 편성(3.26), 점검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(3.29)

V. 향후 추진계획

□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: '16.3.27일 00시

□ 중앙 점검반 현장 점검(3.27일)

○ 시·군·구별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 확인 및 지도

□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방역대책 상황실 비상체제 유지(3.27~)

○ 시행 전, 각 지자체 및 기관, 협회(단체)별 이행 준비 상황 확인 및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 안내

□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결과보고(3.27~28)

○ 지자체, 농협중앙회, 협회 등 이행실적 AI예방통제센터 제출

- 농가, 지자체별 주요 조치사항, 중앙 점검반 추진상황 등

○ AI예방통제센터 점검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(3.29)

참고 1 중앙 합동 점검반 구성현황

□ 점검지역 : 31개 시군구(경기도), 점검반 14개반 28명

시도	시군	농식품부			검역본부·경기도		
		직급	성 명	휴대폰	직급	성 명	휴대폰
경기도 5개시군 (인접시군)	광주시	사무관	김상현	010-3070-8653	주무관	박세범	010-8343-0038
	용인시	주무관	김승래	010-2745-6685	주무관	최문정	010-5392-8922
	이천시	주무관	정지원	010-3397-7146	주무관	조기현	010-4615-4938
	안성시	주무관	최종범	010-4533-1936	주무관	배종철	010-4524-5833
	여주시	서기관	서재호	010-2745-3376	주무관	유현지	010-7533-1262

시도	시군	농식품부·검역본부			검역본부·경기도		
		직급	성 명	휴대폰	직급	성 명	휴대폰
경기도 26개시군 (주변시군)	오산시	주무관	이주희	010-6206-3501	주무관	정연홍	010-2714-6757
	평택시						
	화성시						
	수원시	사무관	조재성	010-3628-5279	사무관	고태오	011-9865-5610
	과천시						
	의왕시						
	군포시						
	안양시	사무관	김민호	010-4765-9247	사무관	송웅석	010-3304-5440
	광명시						
	시흥시						
	안산시						
	하남시	주무관	김정희	010-9483-6400	주무관	김재훈	010-2989-7176
	성남시						
	구리시						
	김포시	사무관	이종태	010-3305-1373	주무관	김재범	010-9998-6463
	파주시						
	고양시						
	부천시						
	의정부시	사무관	송시욱	010-9259-1421	주무관	장재영	010-7600-5580
	동두천시						
	양주시						
	연천군	사무관	노연한	010-6235-6189	주무관	김수지	010-2922-3640
	포천시						
	남양주시						
	양평군	사무관	김은옥	010-9586-8456	주무관	안은순	010-4603-0933
	가평군						

* 점검반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참고 2

주체별 방역조치 대응요령

주체별	주체별 역할
축산농장 가금판매소	□ ‘축산농장’이라 함은 닭, 오리, 메추리 등 가금을 사육하는 농장이며, 가금사육장에서 닭, 오리 등 가금을 사육하는 가든형 식당, 계류장을 포함한다. □ 가금판매소는 살아있는 닭, 오리 등을 계류하여 판매하는 곳에 해당한다. ①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, 차량의 내·외부를 철저히 세척·소독하며 농장의 내·외부 또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. ② 가금판매소 종사자는 판매소내 가금을 모두 비우고(All-Out) 일제히 세척 및 소독하고, 소유 계류장, 가금운송차량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. ③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이동중지 대상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 신청 흐름도 > 신청서 작성 신청인 → 접 수 처 리 기 관 (시·도 가축방역기관) → 신청내용 검토 처 리 기 관 (시·도 가축방역기관) → 이동승인 통보 처 리 기 관 (시·도 가축방역기관)

축산관련 종사자	□ ‘축산관련 종사자’라 함은 임상수의사, 수집상, 중개상, 가축 분뇨 기사, 동물약품·사료·축산기자재 판매자, 농장관리자, 가축운송기사, 사료운반기사,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. ① 축산관련 종사자는 소유 차량을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·외부를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. ② 축산농장 및 가금판매소에 닭, 오리 등의 가금을 공급하는 가금유통차량의 경우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 가까운 거점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도록 한다.
축산관련 작업장	□ ‘축산관련 작업장’이라 함은 가금류 도축장, 사료공장, 사료 하치장, 사료대리점, 분뇨처리장, 공동퇴비장, 가축분뇨공공처리장, 공동자원화시설, 축산 관련운반업체, 축산관련용역업체,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, 축산 컨설팅업체, 퇴비제조업체, 종계장,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을 포함한다. ① 축산관련 작업장에서 이용하는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고, 차량의 내·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작업장 전체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. ② 분뇨차량, 가금중간유통(계류 등)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한다. < 예 시 > ① 생축 운반차량은 명령 발동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·외부 세척·소독 실시 ② 사료운반 차량은 명령 발령 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·외부 세척·소독 실시

농림축산 식품부	□ 관계 기관별(국민안전처, 지방자치단체(시·도), 경찰청, 국방부 등) 행동요령을 총괄 지휘한다. ① 전국 이동중지명령 발동 후 동 명령기간 동안 이행점검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. ②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AI 방역상황실 비상체제를 24시간 운영 및 대응에 따른 각종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한다. ③ 명령 발동 이전, 지자체 및 기관, 협회(단체)별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을 안내한다. ④ 명령 발동 이전, 각 시·도(농정국장 참여)하여 협의회를 개최 하고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한다. ⑤ 경기도 또는 이천시 지역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. ※ (기간) '16.3.27일, 00시부터 '16.3.28일 00시 까지(24시간) ※ (대상) 가금류 축산농장의 가축,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, 물품 < 명령 발동 기준 > ①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동중지 기간 중 이동중지 대상인 축산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(차량 포함)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, 역학관련 농장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조류인플루엔자(AI)에 대한 방역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동 중지를 해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 ⑥ 관계부처(국민안전처, 시·도, 경찰청, 국방부 등)를 포함하여 합동점검반 편성, 운영을 계획하고 및 일시 이동중지 이행 사항실태에 대해 점검한다.
---------------------	---

국민 안전처	□ 합동점검반편성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이행 사항 실태를 점검한다. ① 주요도로에 거점소독시설 및 임시 통제초소를 방문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및 명령위반 여부를 점검한다. ②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및 출입 통제 여부를 점검한다. ※ 가금류(닭, 오리) 도축장, 사료제조업체, 분뇨처리업체 등 ③ 가금류·축산관련 물품·차량·종사자의 농장의 이동중지 및 출입 통제 여부를 점검한다. ④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정보를 통한 축산시설 출입 여부를 점검을 할 경우 이동중지 이행점검표(이하 “이행 점검표”라 한다)를 참고하여 점검할 수 있다. ⑤ 특히, 이동중지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점검한다. ※ 시·도(시·군·구), 읍·면·동을 통한 운영실태 상시 점검 및 결과 보고체계 구축 등을 점검 ※ 이동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지자체(시·군) 조치 점검 및 지도 ⑥ 지자체와 관할 경찰 인력, 국민 등 동원 및 관련 업무 추진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. ⑦ 점검결과,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 조항에 따라 조치하고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. ⑧ 기타 이동 중지명령기간 중 발생하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관리한다.
-------------------	---

농림축산 검역본부	□ 중앙기동 일제점검단을 구성하고 각 시·군·구의 주요도로 및 축산 관계시설(도축장, 퇴비공장 등)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. ① 중앙기동 일제점검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센터(가축 질병방역센터)의 인원을 포함하여 16개반 32명으로 가축 방역관으로 구성한다. ※ 검역본부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점검 이전에 점검지역 및 점검목록(업체, 거점소독시설 등)을 제공 및 협의 ② 농림축산검역본부(가축질병상황실)는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가 KAHIS(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)의 차량 GP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검색 권한을 사전에 부여한다. ※ 또한, 시·도가 가축전염병의 확산 예방 및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차량 정보 열람이 가능함을 지도·교육 ③ 지자체의 점검과는 별도로 전국의 가금관련 축산시설, 축산 농가에 대한 차량 출입여부를 지역별, 시간대별로 점검하여 지자체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한다. ※ 동 명령발동기간(26일~27일) 중 축산관계시설, 주요 농가 등을 기준으로 KAHIS 출입내역을 조회한다. ④ GPS 차량 및 이동중지 명령 대상자에 대해 이동중지 발령 전과 발령 후의 행동요령 등에 대해 사전에 SMS(문자), SNS 등을 이용 하여 홍보한다. 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이동중지 명령 발동 기간 중 24시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	--

지자체 (시·도)	□ 지자체는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금, 차량 등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(상황별로) 농식품부에 보고한다. ① 명령 발동 이전, 전국 지자체(시·도)는 농정국장 주재 하에 관할 시·군·구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 한다. ① 지자체(시·도)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계획을 마련 하여 농가, 축산관계 시설(도축장, 사료공장, 분뇨처리시설 등),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. < 점검 방법 > ① 주요도로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여부, ②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·출입통제 여부, ③ 가금류·축산관련 물품·차량·종사자의 농장 이동중지·출입통제 여부, ④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정보를 통한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을 할 경우 이동중지 이행점검표(이하 “이행점검표”라 한다)를 참고하여 점검할 수 있다. 점검 결과,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조항에 따라 조치 ② KAHIS(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)의 축산차량 GPS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차량이 축산시설에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,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 조치토록 한다. ※ 시군구(읍면동)는 시·도, 시·도는 농식품부로 매 6시간마다 점검 및 이행사항에 대해 보고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③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결과,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.

※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(벌칙)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가능

④ 지자체(시·군)은 국민안전처, 농림축산검역본부(중앙기동 점검반) 에서 동 명령 위반자에 대한 통보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하여 고발 등 조치토록 한다.

⑤ 지자체(시·도)는 관할지역의 국방부 및 경찰청에 동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등에 대해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반 등을 구성한다.

※ 관할 지역의 경찰 및 군인 인력 동원 등 원활한 협조를 위해 국민안전처 등에 필요시 협조를 구한다.

⑥ 전국 지자체(시·도)는 이동중지 명령 발동 기간 중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.

⑦ 지자체는 국민안전처,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점검반 요청 시 각 관할 소재의 축산관계시설, 축산농장, 거점소독시설(이동 통제시설)의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
⑧ 지자체는 점검반 요청 시 단속된 축산차량의 축산차량등록 및 GPS 설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
⑨ 동 명령 발령기간 동안 거점소독시설, 이동통제시설 근무자의 근무태세를 재정비하고, 방역복·비닐장화 등 방역물품에 대해 재확인 한다.

⑩ 지자체는 각 거점소독시설 설치된 소독기 분사상태, 방역 차량 등에 대해 재정비한다.

시·도 가축방역 기관	□ 시·도가축방역기관(축산위생연구소 등)은 이동중지 예외 대상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처리한다.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동중지 명령 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예외대상으로 정해진 경우에 신청인이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청 후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승인한다. ② 이동승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대상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 중지 대상제외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(이동중지 대상 제외 승인서) < 예외 규정 > ①사료의 보관·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②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③해당 지역의 AI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(1)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, 생활용품,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(2)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④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,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(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) ⑤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(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) ⑥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(가금육가공장, 동물약품제조업체) ⑦도축장 종사자(품질평가사, 도축검사관 포함)로서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⑧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(농식품부 협의 필요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경찰청	☐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인력을 지원하고 축산차량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단속한다. ①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가 관할지역의 경찰청에 사전 협조 요청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적극 협조한다. ② 이동중지 이행여부 단속은 '지방자치단체'의 점검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.
국방부	☐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인력을 지원한다. ①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가 관할지역의 국방부에 사전 협조를 요청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적극 협조한다.
농협 중앙회	☐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이전 및 발동기간 중 축산농가 등에 대해 소독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한다. ①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, 축협 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(소규모 및 기타 가금 농가 등)에 대한 일제히 소독한다. ② 소속 회원, 및 축산농가, 축산관련시설(사료회사, 분뇨 처리 업체 등)에 동 실시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. ③ 농협중앙회는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. ④ 농협중앙회는 축산관계차량 등의 이동명령 위반에 대해 발견 시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(중앙기동점검반) 또는 관할 지자체(시·군)에 신고토록한다. ☎ 신고(GPS 관련 문의) 전화 : 검역본부(가축질병상황실) 또는 관할 지자체(축산부서)

가금협회	☐ 소속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. ※ 관련 협회 : 토종닭협회, 오리협회, 양계협회, 육계협회 ① 소속 회원농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, 명령발동기간 이행여부를 확인 한다. (1)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, 소유 차량(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) 및 농가에 대한 세척·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. (2) 토종닭협회는 오리협회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의 가금(닭, 오리 등)을 전부 비우고(All-Out) 일제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. ② 각 협회는 농가 대상 홍보실적(SMS 등)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.
계열사	☐ 소속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. ※ 대상 계열사 : 전국 오리, 닭 계열사(계열농가, 계열도축장을 소지한 계열사 포함) ① 소속 계열농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, 명령발동기간 중 이행여부를 확인 한다. (1)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, 소유 차량(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) 및 농가에 대한 세척·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. (2) 특히, 계열 소속 농가가 명령 위반(예외 승인서 발급 제외) 시 해당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평가 등에 반영한다.
가축위생 방역지원 본부	☐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을 동원하여 명령발동기간 중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 및 소독조치 사항에 대해 홍보한다.

참고 3 농가 방역수칙

①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(☎ 1588-4060, 1588-9060)에 신고

②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

-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,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
-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

③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

- 닭·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
 -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
- 닭·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
 -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
- 동물약품 운반차량·관계자 농장출입 금지, 농장주가 직접 구입·운반
- 가축운반차량(어리장차)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, 소독 철저
-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, 닭·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

④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

- 농장 출입구에 「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」는 안내문 부착
-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,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

참고 4

이동승인 신청서

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2서식]

이동승인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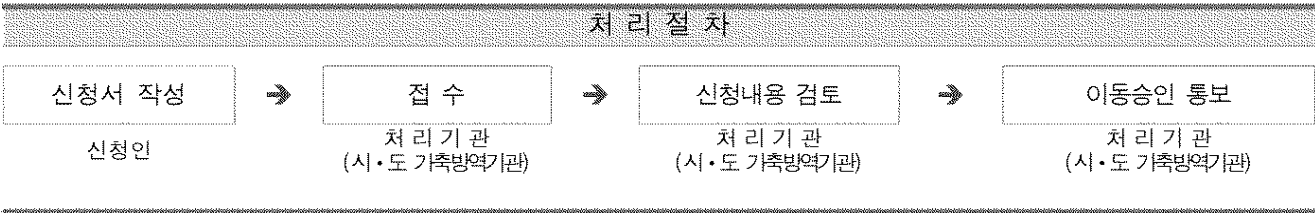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	접수일		발급일		처리기한 즉시	
구분		[] 역학관련 이동제한		[] 일시 이동중지			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			
	주소		(전화 :)				
신청사항	이동사유						
	이동 기간	년 월 일		시부터	년 월 일		시까지
	방문장소(경유지 포함)						
	이동 방법 비고	[]차량(차량번호 :), []대중교통, []기타()					

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9조제1항·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·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

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참고 5**일시 이동중지(Standstill) 대상제외 승인증명서**

제 0000- 0호

1. 대상명:
2. 승인 일시:
3. 승인 사유:

상기 가축, 축산관련 종사자, 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일시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승인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000 가 축 방 역 기 관 장인

참고 6**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**

(근거: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)

1. 사료의 보관·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
2.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
3. 해당 지역의 AI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
 - ①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, 생활용품,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
 -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
 - ②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,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
 -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
 - ③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
 - 축산농장,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
 - ④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
 - 가금육가공장, 동물약품제조업체
 - ⑤ 도축장 종사자(품질평가사, 도축검사관 포함)로서 축산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
 - 다만, 도축장 운영조건 등은 농식품부 사전 협의 후, 승인
 - ⑥ 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(농식품부 협의 필요)

참고 7

점검표 및 확인서

지자체 이행실태 점검표(합동점검반)

점검일시 : 201 . . .

시군명		담당자 (연락처)	
[점검사항 :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] ① 지자체 점검반 운영실태 - 각 지자체의 이동중지 이행여부 점검반 실질운영 여부 : (여/부) - 점검반 편성 및 연락망 구축 등 상황대응 실태 여부 : (여/부) ② 이동 통제소 및 거점소독소 운영실태 -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의 주요도로 설치 운영여부 : (여/부) * 축산차량 통제, 운영인력 적정 및 야간 취약시간대 근무여부 등 -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등 거점소독소 운영 실적여부 : (여/부) - 축산차량 운행 전면 통제에 따른 행정조치 실적여부 : (여/부) ③ 이동중지 명령 위반 확인을 위한 축산차량 관리실태 - KAHIS 조회를 통한 권한 부여 요청 등 사전준비여부 : (여/부) - 기타 특이사항 :			

점검자 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
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농가 점검표

점검일시 : 201 . . .

성 명		전화번호	
주 소			
축 종		사육두수	

[점검사항 :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]

① 농장주 및 가족이 이동한 적이 있는지 여부

- 있음 () 없음 ()

* 있을 경우 방문한 장소의 주소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

*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물 출입여부 파악

- 기재사항 :

② 가축을 입식하거나 출하한 적이 있는지 여부

- 있음 () 없음 ()

* 있을 경우 가축을 입식한 농장 정보 및 도축장 명칭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

- 기재사항 :

③ 농장 소독 실시여부

- 있음 () 없음 ()

* 일시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여부 및 농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농장 소독여부 판단

- 기재사항 :

점검자 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
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축산관계시설 점검표

점검일시 : 201 . . .

성명		전화번호	
주소			
업종		보유차량(대)	

[점검사항 :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]

① 영업자·종업원·운전자 등이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관련 시설물을 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

- 있음 () 없음 ()

* 있을 경우 방문한 장소의 주소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

- 기재사항 :

② 보유차량 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

- GPS 부착 보유차량 대수(GPS부착(대)/총보유(대)) : /

- 있음 () 없음 ()

* 있을 경우 출입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

- 기재사항 :

③ 외부인·외부차량이 출입하였는지 여부

- 있음 () 없음 ()

* 있을 경우 출입자·차량정보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

- 기재사항 :

④ 시설물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여부

- 실시 () 미실시 ()

- 기재사항 :

* 일시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여부 및 공장·차량상태 등을 확인한 후 소독여부 판단

⑤ 전통시장, 가든형 식당 등 취약지역 농가 점검

- 기재사항 :

* 방사사육,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등 점검·작성 및 KAHIS 현행화

⑥ 철새도래지 통제 및 관리현황 등 확인 후 운영상황 작성

- 기재사항 :

점검자 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
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차량 확인서

점검일시 : 201 . . .

성 명		전 화 번 호	
주 소			
업 종		차 량 번 호	

[위반사항 확인내용 기재]

☐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경찰은 축산관련 차량이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을 위반시 확인서 징구 조치

* 검역본부에서 기조사한 GPS 등록차량 중 미 운행 차량을 점검하여 적정 운영여부 확인 및 부 적정 운영 확인 시 적발

○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(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)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

○ 확인서 징구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련 위반내용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른 처분(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)

<확인 사항>

점검자 소속:

소속:

직위:

직위:

성명:

성명:

(인)

(인)

도축장 일제소독 점검표

□ 작업장 현황

- 점검일시 :
- 작업장명(축종) :
- 소재지(주소/전화) :
- 도축업 영업자 :
- 검사관 성명 :

□ 점검사항

점 검 내 용	결 과
• 도축장 내부 세척 · 소독 실시 여부	○, ×
• 도축장 외부 세척 · 소독 실시 여부	○, ×
• 도축장 진출입 도로 및 주변지역 세척 · 소독 실시 여부	○, ×
• AI에 적합한 소독약 사용 여부	○, ×
• 소독 효과에 맞는 적정 희석배수 사용 준수 여부	○, ×
•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재 여부	○, ×

점검자 소속:	직위(급):	성명:	(서명)
소속:	직위(급):	성명:	(서명)

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차량 확인서

점검일시 : 201 . . .

성 명		전 화 번 호	
주 소			
업 종		차 량 번 호	

[위반사항 확인내용 기재]

☐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경찰은 축산관련 차량이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을 위반시 확인서 징구 조치

* 검역본부에서 기조사한 GPS 등록차량 중 미 운행 차량을 점검하여 적정 운영여부 확인 및 부 적정 운영 확인 시 적발

○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(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)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

○ 확인서 징구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련 위반내용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른 처분(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)

<확인 사항>

점검자 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소속:	직위:	성명:	(인)

참고 8**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 집계표**
☐ 지자체

전파 방법		시도	00 도(시)		
		일자	3.27일		3.28일
		시간대	00:00~12:00	12:00 ~ 24:00	00:00~12:00
마을방송(횟수)					
SMS 전송 (횟수, 1인 기준)					
이동중지/ 이동제한 명령위반 (건수)	가축				
	축산관련 종사자				
	차량				
	물품				
축산시설 방문한 축산차량(건) (KAHIS 상 점검)					
임시 통제초소 설치개소수					
일시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(건)					
축산농가 점검(건)					
축산관계시설 점검(건)					
가축(전통)시장(건)					
가든형 식당(건)					

☐ 농협중앙회

전파 방법	시도	농협중앙회		
	일자	3.27일		3.28일
	시간대	00:00~12:00	12:00 ~ 24:00	00:00~12:00
주요도로 소독(개)				
소규모 및 기타 가금 농가(개)				

☐ 생산자단체

전파 방법	시도	00 협회		
	일자	3.27일		3.28일
	시간대	00:00~12:00	12:00 ~ 24:00	00:00~12:00
소속 회원 농가(개수)				
전체 홍보(건)				
SMS/MMS 발송(건)				